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12. 1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3호로 2011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1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참고사항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우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지난 9월 서울시 자치구 감면 조례 개정 관련 회의시 전 자치구에서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동일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고사항]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구 감면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동향
 - 현행 감면 조례의 일부 감면사항(7종)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 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②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③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④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⑥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 ⑦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국회 의결시 시행일(예정) : 2012. 1. 1
- 입법동향 :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축소 여부 등 쟁점사항으로
연내 통과 불투명

참 고 자 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 2010년 구세 감면 실적

연 번	구 분	감면실적 (천원)	비고
합 계		375,512	
1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2)	-	지특법 이관예정
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3)	-	지특법 이관예정
3	문화재에 대한 감면 (§4)	1,066	
4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5)	20,196	지특법 이관예정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6)	198,141	지특법 이관예정
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7)	3,523	
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8)	-	지특법 이관예정
8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9)	-	지특법 이관예정
9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10)	744	
10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11)	-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12)	-	지특법 이관예정
12	준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 감면 (§13)	-	
13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4)	-	
14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15)	-	
15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6)	151,842	
16	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 (§16조의2)	-	'11.9월 신설